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26

발의연월일: 2021. 5. 11.

발 의 자:이원택·송재호·소병훈

이규민 · 이학영 · 장경태

김종민 · 김승남 · 신정훈

윤건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8%) 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를하고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2024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35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을 "2024년 12월 31"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한 감면) ① • ② (생 략)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 (3) -----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 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1일----.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 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 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 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 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 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 ----2024년 12월 31일----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

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③ (생 략)
 -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 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u>.</u>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험	한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길	음)
4	
4년 12월 31일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학	하 으기
11 al 6) L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5. (생략)
- ② (생략)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 월 31 월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중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1. ~ 3. (생략)
-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저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 2. (생략)

<u>2024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u>2</u> 024년 12월 31
<u></u> 일